

정 관

IDL Construction

정 관

제정	1956.	10.	17.		
개정	1965.	6.	1.	1989.	3. 17.
	1972.	1.	15.	1992.	3. 12.
	1974.	4.	9.	1993.	12. 3.
	1974.	12.	30.	1995.	3. 17.
	1974.	12.	2.	1996.	3. 15.
	1975.	4.	2.	1997.	3. 14.
	1975.	10.	2.	1998.	3. 20.
	1976.	4.	28.	1999.	3. 19.
	1976.	7.	2.	1999.	8. 25.
	1976.	7.	20.	2000.	3. 17.
	1977.	11.	1.	2000.	8. 19.
	1977.	11.	7.	2001.	3. 16.
	1978.	2.	27.	2003.	3. 14.
	1978.	12.	29.	2004.	9. 18.
	1979.	2.	27.	2005.	3. 18.
	1980.	2.	27.	2006.	3. 17.
	1981.	2.	27.	2009.	3. 20.
	1982.	12.	4.	2010.	3. 5.
	1982.	2.	27.	2012.	3. 16.
	1983.	2.	26.	2013.	8. 15.
	1984.	2.	28.	2015.	3. 20.
	1985.	2.	27.	2016.	8. 25.
	1986.	2.	27.	2017.	3. 24.
	1987.	2.	27.	2018.	3. 22.
	1988.	3.	18.	2019.	3. 21.
	1988.	3.	18.	2020.	3. 19.
				2020.	5. 13.
				2021.	3. 25.

정 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1
제 2 조	(목 적)	1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6
제 4 조	(광고방법)	6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6
제 6 조	(일주의 금액)	6
제 7 조	(주식의 종류)	7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7
제 8 조의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식)	8
제 8 조의 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우선주식)	10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2
제 10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12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4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16
제 11 조	(삭제 98.3.20)	16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16
제 13 조	(삭제 19.3.21)	16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7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의 2	(사채의 발행)	17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17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9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9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20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 (소집시기)	20
제 19 조 (소집권자)	20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21
제 21 조 (소집지)	21
제 22 조 (의 장)	21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21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22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22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2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22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23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23
제 29 조의 2 (소수주주의 권한)	23

제 5 장 이 사 · 이사회

제 30 조 (이사의 수)	23
제 31 조 (이사의 선임)	23
제 32 조 (이사의 임기)	24
제 33 조 (이사의 보선)	24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24
제 35 조 (이사의 직무)	24
제 35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25
제 36 조 (이사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25

제 37 조	(삭제 2000. 3.17)	25
제 38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25
제 38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25
제 39 조	(이사회 결의방법)	26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27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7
제 42 조	(상담역 및 고문)	27

제 6 장 감 사

제 42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27
제 42 조의 3	(감사의 임기)	28
제 42 조의 4	(감사의 보선)	28
제 42 조의 5	(감사의 직무)	28
제 42 조의 6	(감 사 록)	29
제 42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29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29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30
제 44 조의 2	(외부감사인 선임)	31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31
제 45 조의 2	(삭제 2012. 3. 16)	31
제 46 조	(이익의 배당)	31
제 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1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32
제 2 조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의 선임)	32

제 3 조	(합병신주의 배당기산일)	32
제 4 조	(준용규정)	3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디엘건설 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DL Construction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등 시공 청부업
2. 도로포장 및 도로유지 보수 공사업
3. 전기공사 청부업
4. 정보통신 공사업
5. 건설기계대여업 (아스팔트 포장기계)
6. 소방시설공사 및 정비업
7. 건설군납업
8. 해외건설업 (종합건설업)
9. 부동산개발, 중개 및 컨설팅업, 주택, 상가 등 제 건물의 건설, 판매, 관리 및 임대업
10. 수출입업
11.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제건물 및 시장의 종합관리 및 운영업
12. 양회가공, 제재, 건설자재 제조, 판매및 임대업
13. 기계제작 및 판매업
14. 철강재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항만준설 공사업
16. 석도설치 공사업 및 운영업

17. 조경 공사업
18.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19.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분뇨처리 시설,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20. 문화재 보수 및 유지 공사업
21. 토지개간 및 간척사업, 농림업, 광업
22. 기술 및 일반 용역업
23.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 운영업
24. 국내외 자원개발업(산림, 광산)
25.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레저 및 스포츠 시설 건설 및 운영업
26. 도시재개발사업
27. 경량 골재류 제조 및 판매업
28. 건설용 석산개발 사업 및 건설용 골재류 채취, 제조, 가공, 운송 및 판매업
29. 골프장업
30. 주차장 운영 및 유료도로운영업
31. 건설기계 조립 및 제작판매업
32.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3. 대체에너지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
34. 태양열 에너지 이용시설 기기의 설계, 제작, 판매, 시공업
35.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36.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판매업

- 37. 가스시설 시공업
- 38. 항만시설 공사업
- 39. 방조제시설 시공업
- 40. 토목 · 건축 · 전기 · 난방 · 위생 ·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의 설계 및 감리업
- 41. 도 ·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42. 유통단지 개발 및 운영업
- 43.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사업
- 4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업
- 45.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운영업
- 46. 산업설비공사 시공, 설계 및 감리업
- 4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 48. 관목, 잔디, 화초, 관상수 생산 및 판매업
- 49.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 50. 벤처기업 설립 및 투자와 관련한 사업
- 51. 인터넷사업 및 이와 관련한 사업
- 5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53. 금속가구 제조업
- 54.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 55. 토양정화(복원)업, 지하수정화업
- 56. 토공 · 철근콘크리트업
- 57. 건설사업 관리업

- 58. 리모델링업, 인테리어업
- 5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태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운영 및 판매사업
- 60.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 6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62.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 63. 강구조물공사업
- 64.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65.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 66.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67.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68. 호텔업
- 69. 휴양콘도 운영업
- 70. 그 외 기타 숙박업
- 71. 대부업
- 7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나무병원,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숲
길조성 · 관리 등 산림 관련 사업
- 73. 기계설비 공사업
- 74. 궤도설치 공사 및 운영업
- 75. 산업단지 공사 및 시행, 개발사업
- 76. 도시개발 공사 및 시행, 개발사업
- 77.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일체

의 사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폐기물처리시설, 하·폐수종말처리 시설, 분뇨, 오수처리장, 정화조 및 축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78.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79. 부동산개발, 산업공장시설, 일반토목, 건축, 수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의 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측량, 조달, 감리, 컨설팅, 공사관리 등 일절의 시행 및 기술용역업

80. 무역, 군납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중기대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81. 포장용 아스콘, 투수콘 및 상온합제 제조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82. 고속도로 휴게업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

83. 오락,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84. 엔지니어링 및 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

85. 에너지관리 진단업, 시설물의 안전진단업

86.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87. 종합감리전문업

88. 물류창고(센터)업

89. 지하수 개발·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90. 공중목욕탕, 수영장, 고급사우나업

91. 스파 서비스업

92. 음식점업

- 93. 음, 식료 제조 판매업
- 94. 체육시설 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95. 각호에 관련된 위탁운영업
- 96.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 97. 각호에 관련된 스포츠 서비스업
- 98. 위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lconstructio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다만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종류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하지 않는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 또는 일정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상환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의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이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상환우선주식을 강제상환한다.

② 이 회사는 본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가액은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상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 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상환우선주식을 제8조의3에서 정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 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8 조의 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3. 이 회사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환기간 내에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제3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나.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우선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다.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1년 평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4. 이 회사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전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전환우선주식을 강제전환한다.

②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및 수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전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전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전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를 통해 그 전환우선주식을 제8조의 2에서 정한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

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
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
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
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삭제 98. 3. 20)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삭제 19. 3. 21)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의 2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

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그 관련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 참여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그 관련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

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지점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 장)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

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

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9 조의 2 (소수주주의 권한)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이 사 회

제 30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각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삭제 2000. 3.17)

제 38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8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42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
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
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2 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42 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의 5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2 조의 6 (감 사 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

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의 2 (삭제 2012. 3. 16)

제 46 조 (이익의 배당)

- 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정관은 제64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 정관 제31조 및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 간의 2020년 3월 27일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또는 감사를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제 3 조 (합병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이 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 간의 2020년 3월 27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 중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합병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기산점은 위 합병 전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우선배당 기산점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